

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형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9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김형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규남,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
김재진, 김종길, 김지향,
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서상열,
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
옥재은, 유만희, 윤영희,
윤종복, 이봉준, 이상욱,
이성배, 이희원, 임춘대,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31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」는 2006년 7월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서울시 각종 문화예술정책의 근거 규정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음.
- 다만,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상위법령으로 「지역문화진흥법」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관련 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- 따라서 현재 명기된 「문화기본법」 및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외 「지역문화진흥법」을 추가함으로써 서울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1조(목적)에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역문화진흥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문화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”을 “「문화기본법」”으로, “같은 법 시행령에서”를 “「지역문화진흥법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 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 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<u>「문화기본법」</u> 및 같은 법 시 <u>행령</u> , 「문화예술진흥법」 및 <u>같은 법 시행령에서</u>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「문화기본법」</u> ----- ----- <u>「지역문화진흥법」의 목적을</u> <u>달성하기 위하여</u> ----- ----- -----.

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(목적) 규정¹⁾을 변경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목적규정은 입법목적을 명시한 조항으로 통상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며, 본 안 또한 「지역문화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을 뿐 조문 단독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별다른 요인은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